

교회는 악한 자, 억울한 자, 권위에 억눌린 자들을 보호할 특별한 책임이 있으며, 부정행위를 탄핵하고, 악을 회개하도록 부름을 받았다(이사야 61:1~2). 교회는 가부장적 억압과 각종의 성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여성들이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기독교여성상담소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지침서를 발간하며

우리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교회여성들을 돕기 위하여 1998년 설립되었습니다. 창립이후 상담과 교육활동을 해왔으며 주된 사업으로 교회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교회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공청회'를 통하여 교회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의 어려움을 절감하게 되면서, 교회내 성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교단 헌법에 '성폭력 관련법안'을 제정해야한다는 취지로, 2000년 11월에 "교회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교회법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2001년 4월에는 기독교여성단체들이 교회내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2002년 11월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51회 총회에서 "성폭력 극복과 예방을 위한 교회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상담소와 교회여성단체들의 이 같은 노력은 세계교회협의회가 벌이고 있는 폭력극복 10년 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활동입니다.

올해는 우리 상담소의 숙원사업인 <교회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지침서를 발간하게 된 취지와 목적은 교회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교회

발행일 2003년 8월 25일
 발행인 박성자
 발행처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주소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4층 (100-391)
 상담전화 02-2266-8275
 사무전화 02-2285-4275
 팩스 02-2269-0670
 E-mail cccvaw1998@yahoo.co.kr
 홈페이지 www.8275.org
 글 기독교여성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반
 법률감수 이명숙 변호사

본 사업은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실천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며 본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이를 선교과제로 전환시켜 사회와 교회를 성 정의에 입각한 평등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교회내 성폭력, 특히 목회자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교회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상담소는 개소 이후 5년간 90여건의 교회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왔으나 사후처리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방과 교육 홍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책자를 통해서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교회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와 예방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성폭력이 사라지고 성 정의와 통전적인 성 인 식의 영성이 새롭게 싹트기를 바랍니다.

2003년 8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소장 박성자

차례

1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지침서를 발간하며
4	성폭력 극복과 예방을 위한 신앙고백
8	참회와 결단
10	성폭력이란
	- 성폭력의 실태
11	교회내 성폭력이란
13	교회내 성폭력의 실태
14	교회내 성폭력의 유형
17	교회내 성폭력의 특징
20	신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성서 오용의 예와 올바른 해석
23	성폭력 사실이 드러난 이후 목회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들
26	교회내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지침
29	교회내 성폭력 피해 대처방법
	부록
31	성폭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33	성폭력의 후유증
34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38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목회적 지원
	- 의료적 지원
	- 법률적 지원
	- 심리적 지원
45	성폭력 피해자 권리현장
47	성폭력 상담소 연락처
48	참고자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세기 1:27).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고 존귀하게 창조되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은 상호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개인의 온전성과 존엄성에 대한 어떤 상해도 하나님 형상에 대한 침해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 성폭력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고, 파괴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죄 중에도 큰 죄이다.
- 성폭력 즉 성적인 괴롭힘, 학대, 착취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이다. 하나님은 성적인 학대와 불의와 폭력으로 인해 인간이 파괴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인간이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향유하기를 원하신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 계급, 인종 등에 따른 차별과 불의와 폭력이 현존하고 있다.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각종의 차별과 불의와 폭력에 주목하며, 특히 성폭력 문제에 대해 신앙적 응답을 하고자 한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몸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고린도전서 6:19)

-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누구든지 인간의 몸을 파괴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을 존중하지 않고 폭력의 관계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물질화하여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다.
- 성폭력의 본질은 성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의 몸에 가하는 폭력이다. 성폭력은 성을 도구로 하여 지배를 유지하고자 하는 폭력 행위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신앙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그릇인 몸에 가하는 어떠한 폭력도 반대한다.
- 성폭력은 몸에 대한 폭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권폭력이다. 연령, 성(gender), 지위 등에 근거한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 대해 저지르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정의에 위배됨을 밝힌다.

평화와 평등의 세상을 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누가복음 4:18~19).

-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억압과 차별과 불평등으로 병든 세상에 자유와 정의와 평등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 폭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성폭력이 사라지고 성차별주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평화와 평등의 세상을 위해 오셨다.

-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신다. 또한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신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소생의 힘을 주시고, 가해자에게는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신다.
-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자들을 실족케 하는 행위에 대한 대답은 용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밝혔다(마태복음 18:6). 예수는 약자에게 행해지는 폭력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사이의 상호 존중이 믿음의 삶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친다(마가복음 10:14). 성폭력은 약자에 대한 무시이며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는 존엄성과 상호 존경에 기초를 둔 관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치유와 재창조의 성령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로마서 8:22~24)

- 성령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영, 재창조의 영이다. 성령은 고통당하는 피조물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주는 영이며, 불의와 폭력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영이다.
- 성령은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모두를 새롭게 하고, 성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적인 사회를 새롭게 하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함으로써 더 이상 성폭력/폭력이 없는 ‘하나님의 평화’ 세상을 이루어 나가신다.
- 성령은 치유하는 영이다. 성령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소생할 힘을 주신다. 성령이 피

해자와 함께 탄식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극복해 나감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도우신다.

성폭력에 책임적인 교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마태복음 5:9)

- 교회는 약한 자, 억울한 자, 권위에 억눌린 자들을 보호할 특별한 책임이 있으며, 부정행위를 탄핵하고, 악을 회개하도록 부름을 받았다(이사야 61:1~2). 교회는 가부장적 억압과 각종의 성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여성들이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 교회가 이러한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려면 억압과 고통을 조장해 온 구조적 불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대안적 삶을 창조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와 가부장제와의 유착을 끊어 내는 내적 갱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적 갱신이 없이는 교회가 성차별주의로부터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 오늘날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성폭력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한복음 18:37), 교회가 피해자 편에 서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 교회공동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부당한 폭력을 당하고 있고 성폭력은 분명히 죄라고 명명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반해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분명히 묻고, 그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치료과정을 통해 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추구하여야 한다.

- ‘성폭력 극복과 예방을 위한 교회 선언’ 중에서 -



참회와 결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모든 차별과 불의와 폭력,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의 몸을 파괴하는 성폭력에 대한 죄를 참회합니다.

성폭력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존엄한 인권에 대한 침해요, 불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침해요,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불의요, 죄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폭력 범죄를 그치게 하고 피해자를 더 큰사랑으로 치유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참회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를 겪게 하며 교회공동체를 파괴하는 영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통찰을 하지 않았으며, 성차별과 성폭력이 가부장적 구조와 문화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부장제와의 유착을 끊어내는 교회개혁 작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性)에 대한 교회의 왜곡된 가르침과 가부장성으로 인해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되도록 한 교회의 잘못을 간과하였음을 참회합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삶이 깨어지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입 다물도록 했고 피해자에게 잘못된 용서와 화해를 강요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침묵을 조장하여 성폭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양성의 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잘못된 신학전통, 성서해석, 교회의 구조와 관행을 문화적 폭력으로 고백하고 성차별주의를 죄로 규정할 것입니다. 또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신학적 입장을 정립할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온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성폭력 근절의 과제를 교회 선교의 중심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신학적 입장 표명과 구체적 행동강령을 반포하며, 신학교육 과정에 평등한 양성회복과 올바른 성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피신처 등의 운영과 대안활동에 착수하며, 특히 기독교와 교회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실태를 밝혀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불의와 폭력을 극복하는 일에 신앙적으로 응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며 가해자에게 거듭난 삶을 살도록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을 결단합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실태

피해자 개인과 그 가족, 그리고 사회전체에 대한 치명적인 범죄인 성폭력은 60년대 이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가을에 간행된 국감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는 99년 8,566명, 2000년(~7월) 5,446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신고율이 6%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년에 15만 명 이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2000년 4월 6일, '성 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 558명 가운데 13.4%인 75명이 지난 1년 동안 최소 한 차례 이상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성폭력 피해자는 신고도, 상담도 하지 않고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은 발생건수에 비해 신고율이나 상담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자칫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남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폭력은 숨겨진 범죄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증가현상이 뚜렷하고 범죄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그 모습도 강도강간, 윤간 등의 형태로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내 성폭력이란

교회내 성폭력이란 교회나 기독교기관 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신도나 고용된 목회자(부담임 목사, 전도사 등)에게 성폭력이나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목회적 돌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 행위를 빙자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는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유무와 관계없이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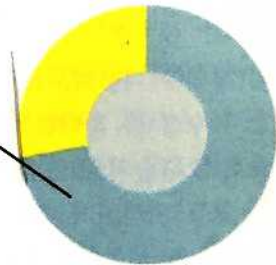
이 정의는 다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그 특수성 중 하나는 왜곡된 남성 중심적 성서해석과 성차별적인 교회의 관습의 영향입니다. 우리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며 대부분 전통적 유교적 여성상을 내면화한 여성들입니다. 이들에게 남성중심의 성서해석이나 성차별적인 교회관습은 순종하고 인내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관습은 교회여성들로 하여금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섬기는 것을 신앙의 행위로 이해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여성들의 신앙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수성은 가부장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목회자상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관계가 성폭력에 이용되는 점입니다. 목회자와 신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대부분 목회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종교적 행위로 자행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피해자

가 문제를 인식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폭력은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믿고 따르는 신도들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뒷받침되는 이러한 목회자에 대한 가부장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와 신뢰관계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갖는 여성의 경우, '하나님의 대변자'인 목회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의문을 느끼면서도 목회자의 요구에 순응하게 됩니다. 이 점이 일반 성폭력과 가장 큰 차이점이고 특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목회자 비율
전체 교인 중 여성교인 비율 65~70%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2001년 통계)
목회자 전체 10,145명 중 여성목사 362명 3.6%

기독교대한감리회(2002년 통계)
목회자 전체 7,600여 명 중 여성목사 400여명 약 5.4%

한국기독교장로회 (2002년 통계)
목회자 전체 2,154명 중 여성목사 180명 8.4%

교회내 성폭력의 실태

기독교여성상담소의 통계를 보면 98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교회내 성폭력은 91건이었습니다. 이중 목회자 관련 성폭력은 84건으로 강간 50건, 성추행 30건, 성희롱을 포함한 기타 사건이 4건이었습니다. 신도간 성폭력은 7건으로 강간 4건, 성추행 3건이었습니다. 목회자 관련 성폭력 중 고소 사건은 9건으로 교단과 사회법에 모두 고소한 경우 4건, 교단에만 고소한 경우가 3건, 사회법에만 고소한 경우가 2건이었습니다. 사회법에 고소한 경우 오히려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3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의 교회내 성폭력 신고 기간 중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모두 7건이었으며, 목회자 관련 강간 5건, 성추행 1건, 신도간 강간 1건이었습니다.)

흔히 목회자와 관련된 성폭력은 사이버 종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독교여성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사이버종파의 사례는 두세 건 정도였고 나머지는 모두 정통교단에서 일어나며, 대체로 특정한 교단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주로 당회장실, 예배실, 기도실, 교육관 등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기도원이나 별도의 기도처, 피해자의 집, 차안, 때로는 러브호텔이나 여관, 호텔 등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교회내(목회자 관련) 성폭력의 유형

교회내 성폭력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목회자가 여신도와 청소년, 어린이를 상대로 가한 성폭력으로 특히 강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해 횟수도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 목회자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년은 보통이고 3년에서 6년, 심한 경우 10-20년을 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인 강간의 후유증으로 낙태를 한 경우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한 목회자에 의한 피해자가 1명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2명 이상에서 많게는 그 피해자가 40-50명에까지 이릅니다.

교회내 성폭력은 개인상담, 심방, 안수나 안찰, 입신 등의 치유행위나 종교체험을 빙자 또는 악용한 경우가 많으며 목회자의 피곤을 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위 수종위원제도나 안마요원의 형태를 통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종교행위를 빙자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성폭력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로 유형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형, 성의통형

- 여신도에게 사랑한다며 접근하여 강간 미수한 경우
- 젊은 여신도들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경우
- 심방 중에 강간한 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2. 유혹형(결혼 빙자형)

- 결혼을 빙자하여 여신도와 성관계를 갖고 폭행한 경우
- 여신도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구약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이라고 접근하여 유혹하여 성농락한 경우
- 사모와 목회비전이 맞지 않아 목회하기 어렵고, 네가 진정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모라며 접근하여 성농락한 경우

3. 종교체험 빙자형

- 안수기도를 해준다며 성추행한 경우
- 자신이 영적 아버지라 하고 “딸아, 딸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간한 경우
-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첫 열매(처녀막)를 바쳐야 한다며 추행하고 강간한 경우
- 성령체험(입신)을 빙자하여 몸을 기누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경우

4. 치유 빙자형

- 죄를 씻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회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강간한 경우
- 성적인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한 후 음란마귀를 쫓아 주겠다고 하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경우

5. 교육, 상담 빙자형

- 성교육을 한다며 청소년과 미혼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경우
- 홀로 사는 여신도를 상담해 준다며 불러내어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여 임신케 한 경우

6. 협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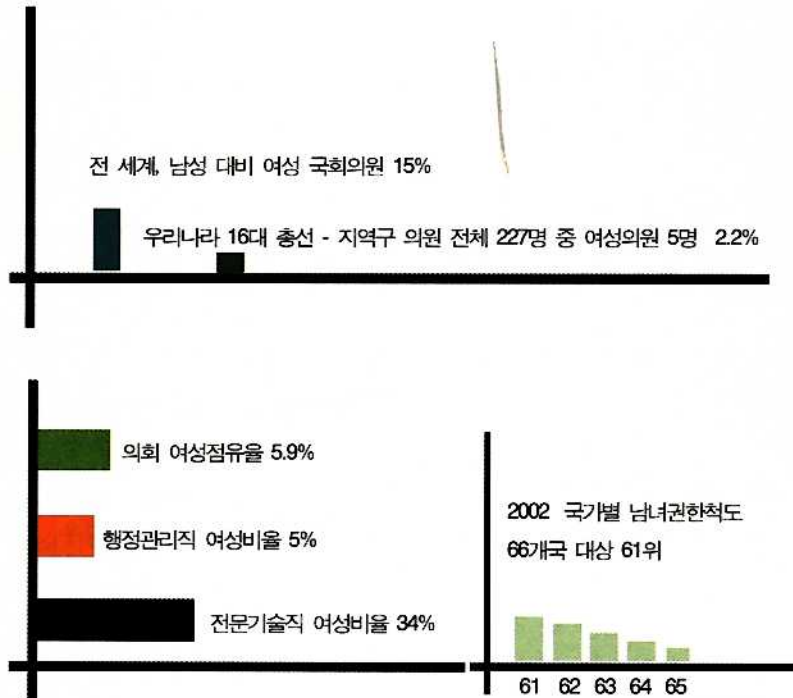
- 자신과 성관계한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공개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여신도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폭력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경우

7. 기타

- 여신도들에게 담임목사에게 충성을 맹세케 한다며 입고 있는 목사의 와이셔츠에 입술도장을 찍도록 한 경우
- 교회 재정을 장악하기 위하여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여사무원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경우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2002)

교회내(목회자 관련) 성폭력의 특징



1. 교회내 성폭력은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와 교사 등 교회의 지도자와 신도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절대적 위계관계 속에서 교회 지도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2. 교회내 성폭력은 명백하게 성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교묘한 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목회자는 자신을 영적 아버지라 칭하며 영적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와 동일하다고 강조합니다.

3. 교회내 성폭력은 대부분 화간의 형태를 띤 강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스스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목회자를 특별한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주의 종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4. 교회내 성폭력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그 법적 해결은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어 처리가 어렵고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여성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며, 증거를 보전할 생각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

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농락당하고, 성폭력을 당했다는 인식을 했을 때는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버리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피해자가 교단에 호소하는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중재과정이 교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장애가 된다는 핑계로 문제를 덮어 버리고자 하는 것이 현재 목회자 성폭력을 대하는 교단과 교회의 정서입니다.

5. 교회의 분파 싸움에 휩쓸려 피해자의 인권은 실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사실이 들어난 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사탄 마귀라고 정죄되거나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가거나 교회내 분파에 휘말려 이용되다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6. 교회 내에서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여러 여성이 한 교회 안에서 피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신도의 관계가 다양한 교회활동을 통해서 지속됩니다. 가해자인 목회자는 피해여성이 성폭력을 신앙의 행위로 이해하도록 만들어 상대가 저항하지 않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합니다. 1-2년은 보통이고 3년에서 6년, 심지어는 10년에서 20년을 넘은 사례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여성의 수도 한 교회에서 보통 2명이고 한 예에서는 40-50명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7. 교회내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은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보다 더 심각합니다.

피해여성이 자신이 목회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

면 신앙적 위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주의 종, 영적 아버지라고 믿었던 목회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지만, 주의 종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주의 종을 용서하라는 주위의 강요는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을 거라고 자책하거나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마귀라고 비난하는 가해자나 교인들의 태도는 피해자를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신앙적 위기는 일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피해를 넘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고, 교회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빚기도 합니다.

8. 교회내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과 종교적 삶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거의 대부분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합니다. 교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옹호하는 그룹으로 나뉘고 교회공동체는 분란에 쌓이게 되고, 교인들도 서로에 대해 불신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며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성서 오용의 예와 올바른 해석

1) “아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레아는 아곱의 첫 부인이지만 아곱이 사랑한 사람은 둘째 부인 라헬이었다. 너는 아곱을 섬긴 라헬처럼 목사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창세기 29장 1-29절의 아곱의 결혼 이야기는 수천 년 전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알려 주고 있다. 성경에 의하면 족장시대의 결혼 풍습은 족내혼이었고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였다.

본 성경 구절에서 아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당시의 혼인 풍습에 비추어 볼 때 관례였다. 이 이야기를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성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매 시대마다 새 진리를 주는 성경을 옛 문헌으로만 묶어두려고 하는 시도이다.

2) “에덴동산이 어떤 곳이나? 그곳은 벗고 있어도 수치를 몰랐다. 영적인 사람은 벌거벗고 서로 보고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에덴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불순종 때문에 에덴동산이 단혔고, 현재 우리는 에덴동산에 살고 있지 않다. 또한 옷을 입고 벗는 것이나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문화의 표현으로써 시대나 문화의 제약을 받는 행위이지 영적인 수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되어 있다. 영적인 사람은 입도 맞추고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과는 이 같은 아름다운 행위를 나누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정말 성결하고 죄가 없으면 벌거벗고 살아도 수치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죄가 없고 욕이 없으면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의롭다하심을 입은 죄인이다.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태가 된 것이 결코 아니다. 구원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고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그 어느 인간도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상태이다. 위의 말은 벌거벗는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억지를 부린 말일 뿐이다. 성서에 나오는 키스로 하는 인사는 성서 시대, 그 사람들의 풍습일 뿐이다. 서양인들은 영적이거나 성결하지 않아도 서로 키스로 인사한다.

4) “솔로몬이 1천명의 궁녀를 거느렸듯이 너는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군주시대에 왕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거나 후궁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기는 하나 현대는 그런 관습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목회자가 군주시대의 왕은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일이 있었으나 솔로몬은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외국인 아내들의 신을 따르며 주 앞에서 악행을 하였고, 그래서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솔로몬의 악행으로 인해 그 아들 대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분열되고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5)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종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음을 상기시키면서 주의 종인 자신에게도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요구는 목회자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목회자와 신도 모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

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베드로전서 2:9)인 것이다. 목회자나 신도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받으셨고 이삭은 끝까지 보호하셨다(창세기 22:12-13).

또한 인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성에 관하여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성”을 바치라는 것은 인간의 권리를 무시한 행위이다.

6)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가 있었듯이 너는 내 돕는 배필이라. 결혼한 배우자가 모두 돕는 배필은 아니다.”

창세기 2장의 인간창조 이야기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2:7),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고(2:22), 여자는 외로운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다(2:18-23).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며 종속적이라고 해석되어왔다. 또한 돕는(에제르 ezer)다는 것은 보조자, 약자로서 강자를 돕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구약의 아훼가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하실 때(시편 121:1)에 ezer를 쓰고 있다. 또한 배필이라는 kenegdó(케네그도)라는 의미는 동반자의 의미로 약자가 강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돕는 의미를 가진다. 결국 창세기 2:18은 남녀가 서로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다. 가해 목사가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한 ‘결혼한 배우자가 모두 돕는 배필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아내가 있으면서도 여성을 현혹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다. 우리 여신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같은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성폭력 사실이 드러난 이후 목회자들이 자신을 합리화 하는 말들

1) “다윗을 책망한 미갈은 불임의 저주를 받았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 비난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거나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주의 종의 잘못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백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베드로전서 2:9)이다. 이를 종교개혁자 루터는 만인제사장설로 설명하고 있으며 모든 개교회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만인제사장설이라 함은 모든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루터는 “교황, 감독, 사제, 그리고 수도승들만이 영적 지위에 있고, 왕과 영주, 농부와 기능공들은 세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은 날조된 생각이며 모든 기독교인들은 진정으로 영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직책이 다를 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기독교인에게 동일한 영적 권위가 있음을 말하였다. 따라서 현 시대에서 목사만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장을 구별해내는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일 뿐이다.

또한 ‘주의 종의 잘못은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며 주의 종을 비난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말은 목회자들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말이다. ‘주의 종의 잘못은 하나님이 직접 벌하신다’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인 해석이다. 성경에는 지도자들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세세하게 알려주며 그 죄값을 치른 것을 낱알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도 칭찬해 마지않으시던 모세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

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임으로(민수기 20:9-12)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으며, 성군이라 칭송받던 다윗도 자신의 범죄로 자녀들의 근친강간, 살해, 반란, 죽음 등 쓰디쓴 고통과 불행을 겪는 죄값을 치렀다.

벌이라는 개념은 '잘못을 드러내어 알게 함'이라는 소극적 해석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주관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불의한 자를 벌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벌하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공동체 구성원의 불의를 지적하며 새로워지기 위한 거듭남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에 대해, 고통 받는 피해자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더욱 노여워하시며, 우리가 알리지 않는다면 돌들로라도 소리 지르게 하실 것이다.

2) “피해자는 음란미귀가 씌어 목회자를 모함하고 있다.”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교인들은 피해자를 기피한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덮어두었으면 좋을 일을 드러내어 문제를 일으킨다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분노를 갖기도 한다. 또한 가해 목회자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인다. 피해여성 한사람을 정신병자나 귀신 들린 자로 만들어 버려 쫓아내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오히려 수치심을 갖게 되며 비난을 받게 된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비난과 위협을 감수하며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때문에 “무고”의 경우는 거의 없다. 피해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다.

3) “여자들이 문제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초대교회에서는 비교적 남녀의 평등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의 가부장제적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었다. 초기 기독교 선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형성에 많은 역할을 했던 여성들의 활동 역시 여성들이 가정 안에만 묶여 있어야 했던 그 시대의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러한 여성들을 동역자, 목사, 지도자, 교사, 사도로 부르며 인정하였다(로마서 16:1-15, 사도행전 18:18, 26, 고린도전서 16:19, 디모데후서 4:19). 그러나 바울의 선교를 반대하는 유대인 교인들은 옛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당시 여사제들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등 무절제하고 부도덕한 예배의식을 행하던 이방종교가 성행하고 있었다. 바울은 교회를 생존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방종교에서 교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교인들이 품위와 덕을 세우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유대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한 교훈과 관례(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 남성의 권위와 여성의 복종 등)를 교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용하였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한하게 하였고, 평등한 교회공동체 안에 당시의 가부장적인 질서가 다시 자리를 잡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바울의 여성에 대한 훈계는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내린 권고였고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었다.



교회내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지침

● 교회 / 교단이 할 일

1. 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2. 교회법에 성폭력의 범죄규정과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각 교단은 성차별과 성폭력예방지침서를 만들고,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4. 각 교단은 목회자를 위한 전문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5. 각 교단은 성윤리를 위한 목회자 자체 정화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6. 각 교단은 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후원해야 합니다.
7. 교회는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힘을 써야합니다.
8. 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9. 교회는 성에 대한 바른 신학적 입장을 정립하고 교회가 이를 실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 목회자 개인이 할 일

1. 목회자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 또는 여성관에 대해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욕구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또는 성에 대해 지나치게 금기시하거

나 남성들의 성적 남용에 대해 관용적이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목회자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목회자 자신도 성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홀로 심방을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4.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욕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5.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고 의논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원-예를 들어 선배 목회자나 전문 상담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탈진과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 육적 탈진을 해소하거나 충전할 수 있는 건전하고도 다양한 방법이나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성적인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자신 앞에 펼쳐질 일들을 미리 상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성도들은 깊은 실망에 빠지게 되며 교회는 분열 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미리 저장해 둬으로써 유혹의 순간을 이겨냅니다.

● 신도들이 할 일

1.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를 표시합니다.
2. 상담이나 심방 시 목회자와 단 둘이 있게 될 경우를 삼갑니다.
3. 목회자를 이상화하거나 절대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익혀 둡니다.
6. 도움 받을 수 있는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알아둡니다.

● 사회적으로 할 일

1. 성직자 관련 성폭력과 같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성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있는 여성에 대한 비하, 여성의 성적 대상화, 성매매 등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4.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올바른 성인식을 갖도록 공교육의 정규 교과과정에 성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보호를 위한 시설을 확장하고 가해자 선도와 치유를 위한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교회내 성폭력 피해 대처 방법



피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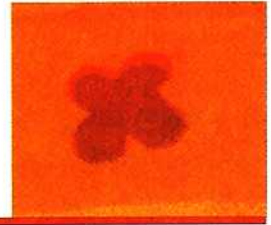
1. 우선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기독교여성상담소 02-2266-8275)
2. 친구나 친지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3. 증거를 보존해 둡니다. (부록 '의료적 지원' 참고)
 - 몸을 씻지 말고 48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 체액이 묻은 옷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해 둡니다.
 -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진단서도 떼어놓습니다.
4. 가해자를 찾아가 그 행위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받습니다.
 - 사과를 받을 때는 가해자가 행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을 해 둡니다.
5. 가해자가 시인하지 않거나 사과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6개월 이내 성폭력특별법은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법의 성관련 범죄는 간통죄, 혼인빙자 간음죄 등입니다. 부록 '법률적 지원' 참고)
 - 교회법에 고소를 원할 경우 먼저 교회의 치리기관에 알립니다. (당회 또는 기획위원회 등)
 - 교회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회 또는 연회 등 상위 치리기관

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고소비용을 고소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300~500만원 정도입니다.)

- 사회법이나 교회법에 고소를 하고 그 과정을 겪는 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회개와 교정의 기회를 주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심리적인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6. 피해자는 피해의 충격으로 인해 불안과 분노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 록



성폭력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것들

성폭력 범죄의 실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그릇된 인식 때문입니다.

1)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목회자, 교사, 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2)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성폭력 피해자 중 30%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고, 생후 만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할머니까지 성폭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강간을 유발한다?

노출이 심한 여름에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성폭력은 일어납니다.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이 강간을 유발한다는 것은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통념일 뿐입니다.

4)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이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우발적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이 통념은 남성을 동물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면 동물과 다를없습니다.

5) 여성들은 강간당하기를 바란다?

어느 누구도 강간과 같은 폭력 행위, 그로 인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6)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강간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껴 저항하기보다는 무력해지기 쉽게 되어 강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7)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대다수 가해자들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과 잘못된 성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겪은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에게 표출함으로써 힘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성폭력의 후유증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전 인격에 걸쳐 깊은 상처와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즉 성폭력 피해자는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음으로써 자신감을 상실하고, 가족관계, 대인관계가 균형을 잃게 되어, 점차 환경으로부터 고립, 단절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거나 부정하고 해리 등의 방어행동을 통하여 인격의 통합성을 상실하게 되어 정체성의 총체적인 위기를 초래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인격장애를 비롯하여 여러 심리적인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정서적인 후유증

불안, 두려움, 우울증, 수면장애, 섭식장애(거식증, 폭식증), 무력감, 분노, 죄의식, 낮은 자존감, 자해, 자살 충동, 신경쇠약, 정신분열 등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2) 사회적인 후유증

대인기피, 학습장애, 무단결석, 무단결근, 가출, 집중력상실, 남성에 대한 혐오,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 사회활동을 회피하게 되거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야기됩니다.

3) 신체적인 후유증

폭행으로 인한 외상, 골반통, 두통, 성병감염, 지속적 출혈, 생리중단, 임신 등의 후유증을 남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질과열, 불임 등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4) 성적 후유증

부부간의 성행위 기피, 불감증, 고통스런 성행위를 호소하거나 성애적인 행동과 강박적 성행동 등 성행위의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흠 있고 더러워졌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여 윤락가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1. 어린이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아동 성학대(child sexual abuse)라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어린이 성폭력의 약 80%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는 친부, 의부, 삼촌, 이모부, 할아버지 등 혈족 혹은 인척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이를 친족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유형은 교사, 유치원 원장, 통학버스 기사, 동네 사람, 경비 등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기 쉬운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당한 피해가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유인하거나 협박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이 금방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공포심을 갖거나 혼자 자는 것을 두려워한다거나 소변볼 때 통증을 느끼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성폭력 피해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대처 ... 자녀가 성폭력 당한 사실을 발견한 부모들은 매우 놀라고 당황해서 아이를 다그치거나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아이에게 나타내면 오히려 피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차분하게 아이에게 피해상황을 물어보고,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십시오. 또한 어린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세심한 보호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2. 청소년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에는 어린이나 성인 피해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윤간,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고 남성피해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는 불량배, 학교 폭력배 등이 집단 폭행, 강도, 흉기사용, 주거 침입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행하는데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친족 내의 피해, 선배나 동급생에 의한 피해, 교사나 강사 등에 의한 성폭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어린이 성폭력은 폭력사용 여부, 저항 여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행위로 취급되어 엄하게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 성폭력은 때때로 동의된 성관계로 오인 받기도 합니다. 이는 요즈음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라고 보이고, 어느 정도 판단 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방 ... 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과 성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자신의 성적인 행동범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행동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성문제를 터놓고 고민할 수 있는 상담창구와 상담원들이 필요합니다.

3.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이란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데이트 상대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전체 상담의 7% 정도로 주로 강간입니다. 데이트 중인 남녀간에 일어나는 데이트 강간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도 이것을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만 윤리적인 잘못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드물고, 간혹 법정까지 가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동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패소할 우려조차 있습니다.

예방 ...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본인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과 한계 행동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성은 여성의 의사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직장내 성폭력이란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에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혹은 거래처 직원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입니다. 직장내 성폭력은 전체 성폭력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직장상사나 동료,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 등입니다. 성적인 폭언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직장 내에서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성폭력의 피해자는 모욕감이나 수치심 또는 위협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정신장애나, 두통, 근육통,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등 신체적인 장애까지 가져옵니다. 또한 직장내 성폭력은 노동조건 의 악화, 노동의욕의 상실, 인간관계의 훼손 등 업무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 외에 함께 일하는 사람, 나아가 직장 전반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처 ... 직장내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여직원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직원노조나 여직원회 등과 논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폭력 발생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창구 등을 개설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성폭력을 빌미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직업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사이버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은 대화방에서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 요청이나 성적인 메시지 전달하거나 성에 관한 개인의 사적인 자료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거나 게시판에서 상대방을 방해하는 행동, 동료나 친구, 아는 사람에게 당신과 관련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의 연장으로 우편이나 전화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행동입니다.

예방 ...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유추해낼 수 있는 번호는 피하고, 정기적으로 바꿉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합니다. 당신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대화할 필요는 없으며, 원치 않는 메일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통신을 그만둘 권리가 있습니다. 통신에서 만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일 낮은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주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쪽지나 메일의 수신거부 프로그램이나 특정내용이나 발신자에 따라 자동으로 전자우편 삭제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가해자는 자신감 없고, 우유부단하며, 기술이 부족한 초보자를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을 습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1. 목회적 지원

목회자는 교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입니다. 성폭력 문제를 접한 교인들이 안심하고 목회자를 찾을 수 있고 적절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용서 할 수 있는가?'

기도와 영적인 상담, 성서연구를 통해서 목회자는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성폭력 주제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목회자 자신이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평소에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 목회자를 신뢰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목회자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소나 사회복지센터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 둡니다.
- 교인들로 하여금 평소에 성폭력상담소나 관련 기관에서 훈련받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목회적 도움을 주기 위해 성폭력 관련 상담소나 기관들과 정보를 나누고,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 목회자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관계 속에서 비밀을 지켜줄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더 이상의 폭행이나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

단이 될 경우에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여성 피해자들은 남성 목회자를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 목회자나 평신도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성 목회자들이 여성 피해자를 돕는 경우 안심시키기 위해 어깨에 손을 얹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의의 행동일지라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도움을 주는 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목회자 자신이 성폭력 문제를 불편하게 느끼거나 피해자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면 다른 목회자나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적 지원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는 즉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로 몸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성병이나 성기 주변의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병원에 다녀오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은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특히 강간피해의 경우 정자가 몸속에서 살아 있는 시간이 48시간입니다. 그 외 다른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악화되거나 아물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가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대 몸을 씻지 마십시오. 샤워 등으로 증거물이 씻겨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은 옷 그대로 가야 합니다. 옷 등에 묻은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상담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의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여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합니다. 우선 몸에 난 상처를 살펴봅니다. 손톱 밑을 검사하여 혹시 가해자의 혈액이나 이물질 등을 확인합니다. 외성기와 내성기를 검진합니다. 증거확보나 진료를 위한 것입니다. 또 혈액 채취를 합니다. 소변검사와 임신여부도 합니다.

증거채취와 검진을 할 때는 피해 당사자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사후 피임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법률적 지원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은

형법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 32장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0년 2월 3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고소를 하려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한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6하 원칙에 따라 범죄사실과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당장 고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될 우려가 있는 증거는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과정이나 법정진술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와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기간이 길어져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소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일 뿐 범죄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면 가해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성폭력 범죄자의 발생을 줄이는 일반 예방의 효과도 있으며, 피해당사자도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되는 성폭력 범죄는 무엇인가?

· '강간'이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녀자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됩니다. 성기가 아닌 다른 이물질의 질내 삽입,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에게 대한 강간, 또는 강제적인 항문성교는 강간에 해당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되지 않고 이루어진 간음일지라도 특수한 경우, 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업무상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간음 그리고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자를 간음하는 경우는 처벌됩니다.

·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부모나 상담원, 변호사 등)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것을 요구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는 친고죄(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때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고,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친고죄일 경우 피해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책임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다고 판정된다면 본인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중 친족성폭력, 상해나 치상 또는 치사를 동반한 성폭력, 강도 강간이나 윤간 등 특수강간,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일 경우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며,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할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하며 그 이후의 취소는 형량에 영향을 주기만 할 뿐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 시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은 1년이지만,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양형정도에 따라 다르며 강간치상의 경우 10년입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요구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공증을 받아둡니다.

항고와 항소

검찰에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즉, 불기소처분)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시 1주일 이내에 해당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4. 심리적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는

1. 피해자에게 치유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2. 피해자의 커다란 고통에 동참하여 함께 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피해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경청해 주고 피해자의 말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4.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을 검토하면서 성에 대한 가치관과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성이나 성폭력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남녀 불평등한 성규범(순결 이데올로기)이나 편파적인 종교적인 신념(가령,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라거나 낙태에 대해 무조건 죄악시하는 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고통을 딛고 살아온 용기 있는 태도를 격려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피해자가 가

진 장점을 격려하고 단점을 인식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6.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7. 피해 경험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 상황을 하나씩 검토하십시오. 또한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와 위험성을 예측하도록 하여 피해자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8.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성폭력 경험을 그대로 믿어주십시오.
9. 피해자에게 그 상황을 유발했거나, 부주의했거나, 저항하지 않았거나,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책임이라고 비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성폭력일지라도 모든 성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1.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2. 성폭력 치유는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지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13. 피해자는 후유증을 극복하여 건강하고 새롭게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14. 피해자가 분노나 고통, 공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15.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위로하고 싶다는 심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16. 피해자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인간관계나 자아 개념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 노출을 꺼리고 비밀보장을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권리 헌장*

취지와 목적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은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성격체성, 신체적 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과 지지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피해자도 피해를 입기 원했거나 피해를 당할만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폭력으로부터 살아나온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을 채택함은 더 이상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사회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해자는 바로 그 피해로부터 살아 나온 이유로 지지받고 격려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1.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1.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1.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1. 고소 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1.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1. 수사, 재판 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1.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권리

* 이 헌장은 '98여성폭력추방주간에 맞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포한 것임

1.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장을 신청할 권리
1.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1. 병원에서 검사 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1. 성폭력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 받을 권리
1. 모든 검사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1. 진료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1.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1. 성폭력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1.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일상적 권리

1.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1.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1.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을 권리
1.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1.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 받을 권리
1.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1.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1.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1.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성폭력 상담소 연락처

단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02)2266-8275 www.8275.org
여성긴급전화	1366
보금(복음)자리 여성쉼터(가정폭력)	02)922-4909
부산성폭력상담소	051)514-3330 www.wopower.or.kr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02)3415-0182 www.cyberhumanlights.or.kr
서울여성의전화	02)2263-6465 www.hotline.jinbo.net
성폭력예방치료센터	063)282-9009, 231-1366
인천여성의전화	032)504-3405 www.hotline21.or.kr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02)441-2387 www.was.or.kr
천주교 성폭력상담소 평화의 샘 (쉼터 이용가능)	02)825-1272 www.w-peace.catholic.to
한국성폭력상담소(쉼터 이용가능)	02)338-5801~2 www.sister.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54-0077 www.rape119.or.kr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02)739-8858 www.counsel.womenlink.or.kr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	02)3477-4076~7 www.moge.go.kr

참고 자료

- 『성폭력과 기독교』, 여성신학사, 2000. 개정증보판.
『깨어진 침묵-성폭력에 대한 여성신학적 응답』, 울리케 아이힐러 외, 여성신학사, 2001.
『아주 특별한 용기』, 엘렌 베스, 로라 데이비스, 동녘, 2000.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이야기』, 여성신학사, 1999.
『성피해 심리치료』, 채규만, 학지사, 2000.
『성과 여성신학』, 한국여성신학회 엮음, 대한기독교서회, 2001.
『목회와 성』, 로이드 레디거,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1.
『그리스도인의 성과 사랑』, 에블린 E. 화이트헤드, 제임스 화이트헤드, 가톨릭출판사, 2000
『사랑을 방해하지들 말아다오』, 하크, 엘리거, 분도출판사, 1988.
“목회자를 노리는 성적 유혹의 덫”, 『목회와 신학』, 1998년 8월호 특집.
“목회자를 노리는 성적 유혹의 덫 2”, 『목회와 신학』, 2000년 6월호 특집.
“성과 목회상담”, 『목회와 상담』, 한국목회상담학회, 2002, 봄, 제2호.
<교회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교회법 토론회 자료집>, 기독교여성상담소, 2000.
<교회청소년 성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자료집>, 기독교여성상담소, 2001.
<성폭력에 관한 법률지침서>, <성폭력 관한 의료지침서> 등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 자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안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행위자 상담

기독교인의 경우 일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에 더하여 신앙과 영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은 일반 여성상담으로는 온전한 치유와 해결을 받지 못하므로 신앙적 관점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전인적인 인간성을 회복하고 교회와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 상담합니다.

신앙 상담

많은 여성들이 교회문제나 신앙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또한 사이버, 이단 종파에 휩쓸려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신앙 상담을 실시합니다.

교역자 부인 상담

교역자 부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위로 받을 길 없는 교역자 부인들을 상담합니다.

가족 상담

부부, 자녀, 시집 갈등 등 가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부부상담, 가족상담을 합니다.

전화 상담

상담 전화 : 02-2266-8275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인터넷 상담 / www.8275.org

온라인 상담실을 클릭하시면 공개와 비공개로 언제든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 상담

면접을 통해 심리치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 시간을 예약한 후, 주 1회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 상담료 1회 60분 기준 5000원